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84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년 11월 6일

발 의 자 : 김경이, 김육영, 소형준, 오중균,  
이용진, 이인순, 이일준, 임태근,  
임현주, 정기혁, 정병기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,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설치 및 임용(안 제1조~제3조)

나. 정책지원관 배치 등(안 제4조)

다. 근무기간, 직무 범위, 직무수행의 제한 (안 제5조~제7조)

라. 근무실적평가, 비밀엄수 의무(안 제8조~제9조)

마.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, 교육훈련(안 제10조~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 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지방공무원법 임용령」,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11. 8. ~ 2024. 11. 12.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책지원관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2. “관리부서”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임용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④ 정책지원관의 임명·복무 등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정책지원관 배치 등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에 둔다.

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·배치·근무실적 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.

제5조(근무기간)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. 다만, 업무태만, 근무수행능력 부족,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

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6조(직무 범위)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 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5분 자유발언·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7조(직무수행의 제한) ① 정책지원관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직선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.

1.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2.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

3.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

4. 선거·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, 업적 홍보·지원  
이 포함된 사항

5.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 
등

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 
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(근무실적평가)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 
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, 업무추진실적, 업무처리능력, 청렴도 및 근무  
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
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  
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.

제9조(비밀엄수 의무)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 
누설해서는 안 된다.

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  
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 
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0조(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)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  
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  
다.

제11조(교육훈련)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

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